



신고·납부 동영상

신고·납부기한
2017. 3. 31.(금)

건설업·벌목업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안내 말씀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17. 3. 31.까지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자팩스로 접수할 경우 3월 27일 ~ 3월 31일 사이에는 수신량이 폭증하여 송·수신 서비스 등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4일(금)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1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3
2 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	6
3 보험료신고서 제출 방법 안내	18
4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서 작성 요령	19
5 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21
6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보험료 간편신고 안내	22
7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무료 서비스 안내	24
8 주요정보 안내	25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전용인증서 사용 안내	25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25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대상 안내	25
- 2017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기준 안내	26
- 자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적용관련 법 개정사항 안내	26
- 건설업 등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비율 안내	26
- 2017년 1월 1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안내	26
- 복지, 대부사업 안내	27
- 퇴직연금사업 안내	28
9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안내	29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건설업 등의 보험료 신고·납부대상 사업주는 2016년도 확정보험료와 2017년도 개선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17년 3월 31일(금)**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보험료와 개선보험료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제1기 보험료는 자동계좌 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 ※ 2012. 1. 21. 이전 가입한 고용보험 자영업자

• 본 책자의 안내에 따라 보내드린 보험료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아래 신고방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신고서 하단 및 본 책자 29 ~ 31페이지 관할 지역본부·지사 참조)에 **2017년 3월 31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전자납부 가능)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필요

팩스 신고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 팩스수신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7. 2. 13. ~ 3. 31. 기간 중에는 전자팩스 수신 여부 자동회신)

우편 신고 2017년 3월 31일(금)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방문 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정된 보험료는 같이 보내 드린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2017년 3월 31일(금)**까지 한국은행 국고 대리점(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3월 31일(금) 경과 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선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추가 납부할 금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위 기일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0075),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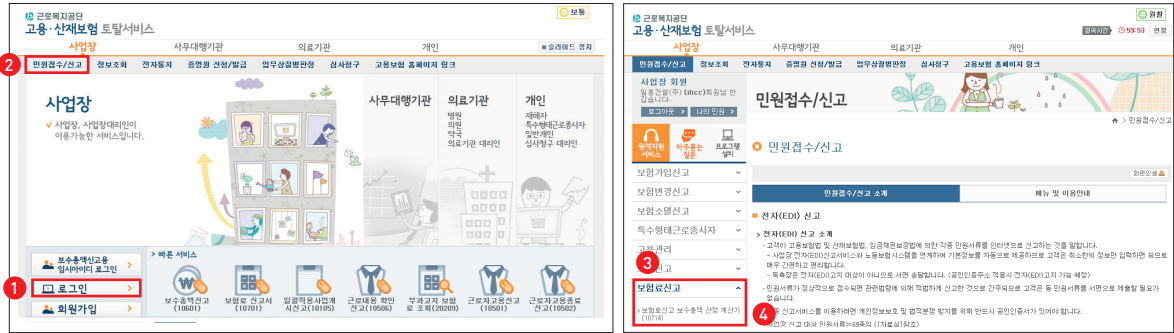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통한 전자신고 서비스 도입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에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잘못 산정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보수총액을 계산하고 보험료도 신고할 수 있는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및 신고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사용 안내 >



- 1 토탈서비스 접속 (로그인)
- 2 민원접수/신고 클릭
- 3 보험료신고 클릭
- 4 보수총액 산정계산기 클릭



- 5 보험구분 선택 및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후 조회
- 6 클릭 후 해당 사항 입력
- 7 입력 완료 후 클릭
- 8 확인 클릭 후 보험료신고 연계 처리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 공단에서는 매년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확정보험료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과거 3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해 조사(확정정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잘못 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보험급여정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외주공사비·노무비	실제 외주공사 또는 노무비이나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무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31%(16년 하도급노무비율)만 신고
생산제품 설치특례 비해당 공사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
직업소개소 알선 현장인력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산하였다라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 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하자보수공사 지역노무비	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
공동도급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의 31%(16년 하도급 노무비율)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표사의 매입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보수총액에서 누락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전부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각 사의 출자비율만큼 해당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각 사의 본사 고용보험으로 신고·납부하기로 협약한 후 출자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총액	<p>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지 않음에도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실 보수'를 적용하고 파악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만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p> <p>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총액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 보수 기준으로 보수총액 산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 중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산정

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작성자 : (전화번호 :)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가 신고 사업장	사업구분:	사업장관리번호:	공사명(건설공사):
	사업장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2016)년 확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① 보수총액	② 보험료율	③ 확정보험료액(① × ②)	개선보험료액		⑥ 추가납부할액(③ × ④)	⑦ 초과액(⑤ - ③)	
						④ 신고액	⑤ 납부액		총당액	반환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6-01-01 ~ 2016-12-31		/1,000						
		실업급여	2016-01-01 ~ 2016-12-31		/1,000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6-01-01 ~ 2016-12-31		/1,000					
		계	-							

▶ 아래 ㉞번 개선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㉞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㉞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017)년 개선보험료 (추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⑧ 보수총액	⑨ 보험료율(일반)요율	⑩ 개선보험료액(⑧ × ⑨)	⑪ 분할납부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7-01-01 ~ 2017-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7-01-01 ~ 2017-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계	-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 개선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선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㉞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㉞ (2016)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4월	명	원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명	원

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

- 가 신고 사업장 9
- 나 2016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10
- 다 2016년도 확정보험료 (예시) 11
- 라 2017년도 개선보험료 (예시) 12
- 마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14
- 사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16

㉞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따라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개선보험료 납부기한 :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5, 제4기-11.15)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㉞)은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구분	개선보험료	사업장명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	원	원	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㉞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총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구분	납부할 금액	사업장명	총당 신청액	총당 후 납부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I. 요약사항

보험료신고서를 본 책자에서 설명하는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설업 보험료 산정방법 및 주요 내용』은 보험료 산정시 유의할 점을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설업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

1. 2016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31%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31%

< 유의사항 >

•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자기공사
- ② 원도급공사
- ③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내역을 모를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를 참조(5페이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2017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 방법

• '17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16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이상 ~ 130/100이하인 경우는 '16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II. 세부 공통사항

가 신고 사업장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사업장작성자 :		(전화번호 :)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가 신고 사업장	사업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 사업구분

- 사업구분은 일반사업장(건설업분사, 건설업, 벌목업, 해외사업장(건설업),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승인 받은 사업장에 한함) 중 해당 사업입니다.

• 사업장의 일반적인 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확인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기재

- 휴대전화, 이메일 등은 신고기한, 납부기한 등 주요 사항을 안내 받을수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건설업 등』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

보수란 ?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㉞의 계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법상의 비과세(㉞-11, ㉞-14, ㉞-15, ㉞-20)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

(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나 2016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나 (2016)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	·	·	·	·	·	·
·	·	·	·	·	·	·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명	원

- ➔ 월별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 월별보수총액은 매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한 보수 포함)을 기재 합니다.
- ➔ 건설업 현장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2016. 1월 ~ 12월[직영근로자 보수 + 하도급근로자 보수]
 - 외주공사비 × 31%(하도급노무비율) ←
- ※ 단, 외주공사비를 월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월할 적용하여 산정
- 월별인원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 [월 보수총액 ÷ '16년 건설업 월평균보수(3,408,840원)]

· 건설업 본사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 산재보험 보수총액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보수 제외, 본사소속 현장 근무직원 보수는 건설현장으로 신고)
- 고용보험 보수총액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전체(대표자 보수 제외) + 원가명세서상의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현장소장, 기사 등) 보수전체
 - ※ 전체 보수총액에서 대표자 보수 등 제외 후 산정한 보수총액을 나 항목 산재, 고용보험 『합계』 금액에 기재하며, 이 금액이 11페이지 다 항목 2016년 확정보험료 ① 보수총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 제외(단, 65세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포함)

· 건설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 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합니다.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 (외주공사비 × 하도급 노무비율 31%)] × 보험료율

- ※ 자기공사, 원도급공사,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는 포함하며,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는 제외
- ※ 산재보험은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소장, 기사 등)가 건설현장에 파견된 경우 건설현장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 사업주가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도탈서비스[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수급인의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 계산시 해당 보수를 제외합니다. 단, 해외 건설공사 파견 근로자는 포함.

다 2016년 확정보험료 (예시)

구분	산정기간	① 보수총액	② 보험료율	③ 확정보험료액(① × ②)	개산보험료액		
					④ 신고액	⑤ 납부액	
					다 (2016)년 확정보험료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6-01-01 ~ 2016-1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6-01-01 ~ 2016-12-31	122,212,275	13/1,000	1,588,750	1,100,000	900,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6-01-01 ~ 2016-12-31	122,212,275	2.5/1,000	305,530	250,000	200,000
계	-	-	-	1,894,280	1,350,000	1,100,000	

① 보수총액

- 10페이지 나 항목 2016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② 보험료율

-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 『(개별)요율』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2016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등

2016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부담금률(해당사업장 한함)을 산재보험료율과 합산표시하였으며,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③ 확정보험료액 = ① 보수총액 × ② 보험료율

※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

예시

- 위 다 항목의 ②번 보험료율에서 '16. 1. 1. ~ '16. 12. 31.까지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1,000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2.5/1,000이므로
- 실업급여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 × 13 ÷ 1,000 = 1,588,759원(원단위 이하 절사) → 1,588,75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 × 2.5 ÷ 1,000 = 305,530.68원(원단위 이하 절사) → 305,530원
- ※ 고용보험료(계) = 1,588,750 + 305,530 = 1,894,280원
- ※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계산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합산한 후 원단위 이하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후 합산

라 2017년도 개산보험료 (예시)

라 (2017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㉔ 보수총액	㉕ 보험료율(일반)요율	㉖ 개산보험료액(㉔ × ㉕)	㉗ 분할납부 여부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7-01-01 ~ 2017-12-31	122,212,275	10.63/1,000	1,299,11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7-01-01 ~ 2017-12-31	122,212,275	13/1,000	1,588,75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7-01-01 ~ 2017-12-31	122,212,275	2.5/1,000	305,530		
	계	-	-	-	1,894,280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㉑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㉘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 (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㉙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㉔ 보수총액

- 2017년도 1년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입니다.

- ㉖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2016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㉑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㉑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㉑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금액이 1,000만원이고 ㉖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800만원일 경우 ㉖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 (800만원 ÷ 1,000만원 × 100 = 80% → 확정보수총액 대비 70% ~ 130% 사이)

㉕ 보험료율

$$\text{산재보험료율} = \text{산재보험료율} + \text{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text{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2017년도 산재보험 일반요율 : 건설업 39/1,000, 건설업본사 10/1,000

※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개별)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개별실적요율 대상은 성립일이 2013. 6. 30. 이전 이고, 건설업본사는 상시근로자 10명(15. 7. 1 ~ 16. 6. 30.) 이상,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은 2015년도 총공사 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 2017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 0.6/1,000

< 사업장 임금채권부담금비율 경감기준 >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퇴직보험(일시금신탁), 외국인근로자 출국 만기보험(일시금신탁) 등에 가입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감을 받으시려면 별도의 부담금경감신청서(퇴직보험 등 가입확인서, 계약서 사본 첨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0.03/1,000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도 >

건설업(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사업장)과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 중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고용보험료율} = \text{실업급여 보험료율} + \text{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2017년도 고용보험료율

구분	2017년도		
	전 사업 동일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전 사업 동일	6.5 / 1,000	6.5 / 1,000
고용안정	150인 미만 기업	없음	2.5 / 1,000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없음	4.5 / 1,000
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기업	없음
		1,000인 이상 기업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	없음	8.5 / 1,000
		없음	8.5 / 1,000

※ 기재된 보험료율이 사업장의 실제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보험료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당한 보험료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료율도 사업주 신고사항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이 추후 확인되면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㉗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라 (2017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㉔ 보수총액	㉕ 보험료율(일반)요율	㉖ 개산보험료액(㉔ × ㉕)	㉗ 분할납부 여부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7-01-01 ~ 2017-12-31	122,212,275	10.63/1,000	1,299,11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7-01-01 ~ 2017-12-31	122,212,275	13/1,000	1,588,75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7-01-01 ~ 2017-12-31	122,212,275	2.5/1,000	305,530		
	계	-	-	-	1,894,280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㉑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㉘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 (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㉙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 ㉗ 분할납부 여부에 일시납부를 선택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시면 3%공제 혜택(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 경감)이 있습니다. (㉗ 분할납부 여부 항목에 [] 일시납부에 표시)

- 분할납부를 선택하시면 해당 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고(㉖ 분할납부 여부 항목 [] 분할납부에 표시), 보험료신고서 뒷면의 ㉙ 항목으로 이동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① 분할납부 여부 항목에서 분할납부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개선보험료 납부기한 :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5, 제4기-11.15)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㉔)은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 0 0 건 설			
	구분	개선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299,110원	324,800원	324,770원	324,770원	324,770원	324,77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1,588,750원	397,210원	397,180원	397,180원	397,18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05,530원	76,390원	76,380원	76,380원	76,380원
계	1,894,280원	473,600원	473,560원	473,560원	473,560원	473,560원

2017년 3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 0 0 건 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⑩ 2017년도 개선보험료액(고용보험의 경우 각 사업별)을 4등분하되 2기 이후 금액은 원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여 균등하게 기재하고, 전체 금액에서 2기 ~ 4기 금액 합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제1기 금액으로 기재 합니다.

예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1,588,750원 ÷ 4 = 397,187.5원 이므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397,180원을 위의 서식과 같이 제2기부터 제4기 금액에 기재 하고 개선보험료총액 1,588,750원에서 제2기 ~ 제4기의 합산금액인 1,191,540원을 뺀 397,210원을 제1기에 기재
 ※ 「개선보험료」는 앞면 ⑩번의 개선보험료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과납액을 개선보험료에 총당하고 남은 잔액을 4회 분할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보험료 자동계좌이체 납부 유의 사항

- 개선보험료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4월 11일까지 신청하시면 2기(5월 15일 납기)부터 자동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제1기 보험료는 자진납부 제도의 특성상 자동계좌이체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기존 자동계좌이체 신청사업장도 2017년도 일시납부 보험료 또는 제1기(납부기한 3월 31일) 보험료는 자동계좌이체 처리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내역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연도 이후 준공되는 공사의 경우, 보험료신고서 뒷면 **마** 항목으로 이동하여 건설공사의 기간 및 금액 명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확정보험료액과 신고·납부한 개선보험료액과의 비교를 통한 추가납부할액, 총당액 및 반환액의 작성 방법 (산재보험·고용보험 각각 확인 및 작성)

• ③ 확정보험료액과 ④ 신고한 개선보험료액(2016년에 신고한 개선보험료액)을 비교하여

가	신고 사업장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번호		공사명(건설공사)			
	전화번호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휴대전화	FAX	소재지	E-mail		
다	구분	산정기간	① 보수총액	② 보험료율	③ 확정보험료액 (① × ②)	개선보험료액	⑥ 추가납부할액 (③ × ④)	⑦ 초과액(⑤ - ③)	총당액	반환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6-01-01 ~ 2016-12-31		/1,000		④ 신고액	⑤ 납부액			
	고용보험	2016-01-01 ~ 2016-12-31		/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6-01-01 ~ 2016-12-31		/1,000						
계	-	-	-	-						

▼ 아래 ㉔번 개선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㉔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㉔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라	구분	산정기간	⑧ 보수총액	⑨ 보험료율 (일반)요율	⑩ 개선보험료액 (⑧ × ⑨)	⑪ 분할납부 여부	㉔ (2016)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실업급여 인원	보수총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인원	보수총액				
(2017)년 개선보험료 (추정보험료)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2017-01-01 ~ 2017-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보험	2017-01-01 ~ 2017-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7-01-01 ~ 2017-12-31		/1,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계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 ③ '16년 확정보험료액이 ④ '16년 개선보험료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

- (③ - ④)금액을 ⑥ 추가납부할액에 기재하고, ⑩ 개선보험료액(일시납부는 3%공제(전자신고 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 후의 금액, 분할 납부는 제1기 분할납부금액)과 합산 납부합니다. (19페이지 납부서 작성 요령으로 이동하여 작성합니다.)

※ ⑤ 개선보험료 납부액이 ④ 개선보험료 신고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2016년도 체납보험료입니다.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 작성 사례 : 추가납부할액 1,000원(③ - ④)

① 보수총액	② 보험료율(일반)요율	③ 확정보험료액	개선보험료액		⑥ 추가납부할액 (③ - ④)	비고
			④ 신고액	⑤ 납부액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	올바른산정 (개선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0	잘못된산정 (개선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1,000	올바른산정 (개선보험료 미납분 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2,000	잘못된산정 (개선보험료 미납분 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함)

- ㉓ '16년 확정보험료액이 ㉑ '16년 개선보험료 납부액보다 적은 경우
 - (㉑ - ㉓)금액이 ㉒ '17년 개선보험료액에서 3% 공제(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당액에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㉑ 2016년 확정보험료액 : 752,000원, ㉒ 2016년 개선보험료납부액 : 1,577,320원, ㉓ 2017년 개선보험료액 : 1,152,320원 일 경우, 2016년 확정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선보험료액의 차액은 825,320원(1,577,320원 - 752,000원)이 되고, 2017년 납부할 개선보험료액은 3% 공제(34,560원 = 1,152,320 × 3%, 원단위 이하 절사) 후 1,117,760원이 됩니다. 2016년 확정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선보험료액의 차액인 825,320원이 2017년 납부할 개선보험료 1,117,76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차액 금액을 우측과 같이 작성합니다.

㉑ 초과액(㉑ - ㉓)	
총당액	반환액
825,320	

총당액란 기재후에 보험료신고서 뒷면의 ㉑ 항목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㉑ - ㉓)금액이 ㉒ '17년 개선보험료액에서 3% 공제(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 경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보험료 일시납부를 선택하시고, 3% 공제한 '17년 개선보험료액(전자신고할 경우 5천원 추가경감)을 총당액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예시

㉑ 2016년 확정보험료액 : 752,000원, ㉒ 2016년 개선보험료 납부액 : 1,577,320원, ㉓ 2017년 개선보험료액 : 752,320원 일 경우, 2016년 확정보험료액과 2016년 개선보험료 납부액의 차액은 825,320원(1,577,320원 - 752,000원)이 되고, 2017년 납부할 개선보험료액은 3% 공제(22,560원 = 752,320원 × 3%, 원단위 이하 절사) 후 729,760원이 됩니다. 2016년 확정보험료액과 2016년 개선보험료 납부액의 차액인 825,320원이 2017년 납부할 개선보험료 729,760원을 초과하므로 ㉒ 분할납부여부를 일시납부로 선택하시고, 총당액과 반환액을 우측과 같이 작성합니다.

㉑ 초과액(㉑ - ㉓)	
총당액	반환액
729,760	95,560

사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 총당이나 반환액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뒷면 ㉑ 항목 분할납부신청서상의 1기 금액(전자신고시 5천원 경감)을 기재하시고,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앞면 ㉒번 개선보험료액에서 3% 공제한 금액(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 경감)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 개선보험료 일시납액(3% 공제 후)에 전액 총당되고도 잔여액이 남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 대상액을 앞면 ㉑번 초과액 란의 반환액에 기재하고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총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건설
구분	납부할 금액	총당 신청액	총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729,760 원	729,760 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계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근로)은행

계좌번호 : 123-45-67890 예금주 : (주)○○건설

2017년 3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건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사업주는 사업주 개인계좌, 법인사업장은 법인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1기를 총당하고 잔여액이 남은 경우에는 기재란을 수평으로 2등분하여 2기 보험료액 및 남은 총당가능 금액을 기재 [이 경우 1기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납부 2기분 납부기한(5.15)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총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건설
구분	납부할 금액	총당 신청액	총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7) 188,080 원	(17) 188,080 원	0 원
	(27) 188,080 원	(27) 16,940 원	172,140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계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근로)은행

계좌번호 : 123-45-67890 예금주 : (주)○○건설

2017년 3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건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총당할 때에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간에는 상호 총당할 수 없습니다.

V.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12. 1. 21. 이전 승인받은 사업장)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확정보험료 신고가 없으므로 ㉑, ㉒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2017년도 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㉑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017년도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수총액 : 23,040,000원(월 1,920,000원 × 12개월)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분할납부하실 수 없으며,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57,600원을 납부방법을 참고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미납부 또는 보험료신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17년 개선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㉑ 보수총액	㉒ 보험료율(일반)요율	㉓ 개선보험료액(㉑ × ㉒)	㉔ 분할납부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17-01-01~2017-12-31	23,040,000	2.5/1,000	57,600
	계	-				

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사용)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구분	금액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9,200원	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	
② 개선보험료	105,950원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③ 개선 3%공제액	원	소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④ 전자신고 경감	원	회계연도 :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6,750원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임금채권보장 / 석면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공제는 개선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개선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산재보험 개선보험료를 50% 초과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소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임금채권보장 / 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자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기한	2017년 3월 31일	납부기한	2017년 3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증에 표시합니다.			
		전화번호 : 1588-0075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자료기준일 :	
			수납인		수납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 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총액(개선, 확정, 3%공제금액, 확정 총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사용)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구분	금액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① 실업급여	6,000원	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	
② 개선보험료	707,600원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③ 개선 3% 공제액	5,890원	소관 : 고용노동부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회계연도 :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886,040원	회계(기금) :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공제는 개선보험료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개선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소관 :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수입징수관계자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기한	2017년 3월 31일	납부기한	2017년 3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증에 표시합니다.			
		전화번호 : 1588-0075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자료기준일 :	
			수납인		수납인

▶ 납부서 작성 예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이 있는 경우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액)이 있는 경우			
2016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 10,000원, 2017년도 개선보험료 100,000원(일시납부), 전자신고	2016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 10,000원, 2017년도 개선보험료 100,000원(4회 분할납부)	2016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액) 10,000원, 2017년도 개선보험료 100,000원(일시납부), 전자신고	2016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액) 10,000원, 2017년도 개선보험료 100,000원(일시납부), 전자신고	2016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액) 10,000원, 2017년도 개선보험료 100,000원(4회 분할납부)	2016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액) 10,000원, 2017년도 개선보험료 100,000원(4회 분할납부)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② 개선보험료	100,000원	② 개선보험료	25,000원	② 개선보험료	100,000원
③ 개선 3%공제액	3,000원	③ 개선 3%공제액	원	③ 개선 3%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02,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3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2,000원
				⑤ 개선 3%공제액	원
				⑥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5,000원

* 확정보험료는 3% 공제 또는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개선보험료도 분할 납부할 경우 3%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 보험료 납부기간 중 가상 계좌별로 1회만 입금가능
- 산재보험 가상계좌와 고용보험 가상계좌는 별도이므로 각각 입금
- 입금 가능 금액 : 10원 이상이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
- 입금가능시간 : 납부기한 내 평일 07:00 ~ 23:00
 - ※ 예약이체, 대량이체불가

신용카드 납부 안내

- 납부대행 수수료 : 보험료 납부금액의 0.8%를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 (납부자 부담)
- 납부방법 :
 - ①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사회 보험료 메뉴 → 산재보험료(연납/자진납) 또는 고용보험료(연납/자진납) 선택 → 전자납부번호 또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 상세내역 클릭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선택) → 납부 처리
 - ② 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분할납부 보험료 자동계좌이체 안내

- 자동이체를 이미 신청한 사업장
 - '16년도 확정보험료 및 '17년도 개선보험료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보험료는 2기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
 - 개선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이 2기부터 자동이체를 적용받으려면 4월 1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금융기관 또는 우리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자동 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고객센터(☎1588-0075)로 유선신청(유선신청은 사업주, 법인 대표이사 또는 법인 직원 가능)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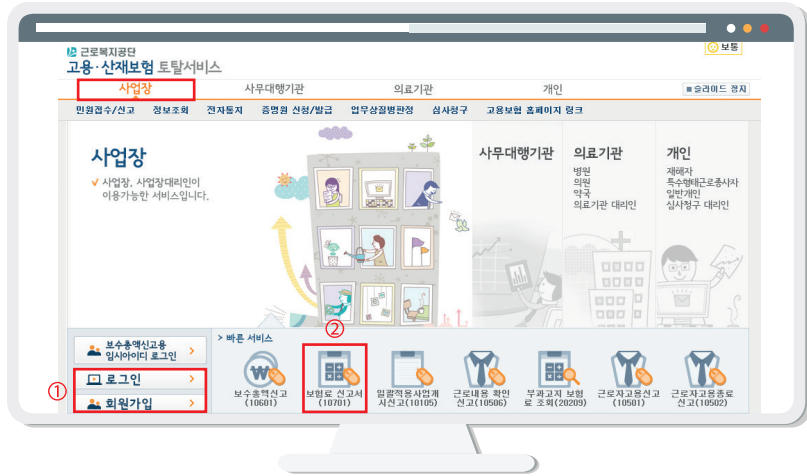
-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 → 가산금의 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미징수
- 연체금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체금 징수(첫달은 3%, 다음달부터 1%씩 최장 7개월 동안 9%)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보험료 간편신고 안내

< 토탈서비스 보험료신고 순서도 >



1. 토탈서비스 접속 → 2. 빠른서비스-보험료신고서



- ① (토탈서비스 접속) 포털사이트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미가입시 회원가입)
- ② (빠른서비스 → 보험료신고서) 로그인 후 바로 옆에 있는 빠른서비스 - 보험료신고서를 클릭합니다.
- ③ 보험구분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보험년도 : 2017 선택, 신고서 구분 : 확정 및 개산 → 조회 클릭
- ④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항목 입력

[별지 제23호 서식] 임시저장 내역 조회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보험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임금채권) 사업장 상태: 사업장 번호: 보험년도: 2017

신고서구분: 사업장명:

⚠ 보험구분, 관리번호, 신고서 구분을 선택하고 우측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수총액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 임시저장자료 삭제는 마이페이지 - 임시저장자료조회에서 조회 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⑤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입력

○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요금	확정보험료	신고액	납부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포함)	2016. 1. 1 ~ 2016. 12. 31	0	.00 / 1000	0		
합계		0		0		
고용보험	2016. 1. 1 ~ 2016. 12. 31	0	.00 / 1000	0		
합계		0		0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	2016. 1. 1 ~ 2016. 12. 31	0	.00 / 1000	0		
합계		0		0		

⑥ '확정보험료 산정기초자료' 입력

○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고직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 ▶ 월별인원, 월별보수총액 등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인원을 기재합니다.
- ▶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관련하여 하도급노무비율을 사용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 현장)은 9페이지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⑦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납부구분(일시납부/분할납부)선택, 작성된 보험료신고서 내용 확인 후 '접수' 클릭(접수완료)

○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수추정액)	요금	개산보험료	납부구분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포함)	2017. 1. 1 ~ 2017. 12. 31	0	.00 / 1000	0	<input type="radio"/> 일시납부 <input type="radio"/> 분할납부
합계		0		0	
고용보험	2017. 1. 1 ~ 2017. 12. 31	0	.00 / 1000	0	<input type="radio"/> 일시납부 <input type="radio"/> 분할납부
합계		0		0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	2017. 1. 1 ~ 2017. 12. 31	0	.00 / 1000	0	
합계		0		0	

⑧ 납부서 인쇄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 포함], 우체국에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신용카드 납부 관련 21페이지 참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무료 서비스 안내

보험사무대행기관 개요

- 공단은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세무사 등 전국에 2,9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 기관을 지정하여 「고용·산재보험 무료 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사무대행서비스 대상

-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료로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임대상 보험사무

- 개산·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
- 보수총액 등의 신고
- 고용·산재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 등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 그 밖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 →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 보험사무대행기관 앱 검색 → 앱 설치 (웹핀)후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

유의사항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기한일로부터 10일전까지 신고 자료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일(17. 3. 31.)까지 신고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 자료를 사무대행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정보 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용인증서 사용 안내

•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란?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제3자(직원 등) 이용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 이용 가능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 퇴직연금서비스 (pension.kcomwel.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건강보험EDI 서비스 (edi.nhis.or.kr) • 국민연금EDI서비스 (edi.nps.or.kr) • 고용보험 (ei.go.kr)

전용인증서 발급 문의 : 1688-2370 / 신청방법 :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고용근로자 50명 미만의 자영업자가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일정기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원인으로 폐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대상 안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벌목업 이외 사업(건설기계관리사업 포함) •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 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로 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2년전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총공사금액 : 산재보험 사업개시공사금액 및 하수급승인금액으로 산정) |
|---|---|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규모별로 ±20% ~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기준 안내

• 지원보수기준

구분	2017년	
	건설업 본사	건설공사 및 별목업
지원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별목재적량 2,700㎡ 미만의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신청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4월 10 ~ 30일까지 신청	건설공사 또는 별목작업의 종료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사업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 말일까지
지원율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의 각 60% 범위 내(신규가입자 : 60%, 기가입자 : 40%)	

자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적용관련 법 개정사항 안내

현행	개정('16. 12. 27 ~)
기초생활수급자 : 실업급여 적용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적용 제외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적용

건설업 등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비율 안내

구분	2016년	2017년
건설업 본사	10 / 1,000	10 / 1,000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8 / 1,000	39 / 1,000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27%	27%
하도급 건설공사 노무비율	31%	30%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17 / 1,000	17 / 1,000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6 / 1,000	0.6 / 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4 / 1,000	0.03 / 1,000

※ 임금채권부담금비율·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보험료신고서상의 산재보험료율에 합산 표시 됩니다.

2017년 1월 1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안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

-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 피보험자전근신고
- 외국인,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
- 근로내용확인신고
-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
- 피보험자이직확인신고
-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방법

4대 사회보험 신고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제출가능

문의 : 피보험자 관련 문의

국번없이 ☎ 1350

복지, 대부사업 안내

• 자세한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 **용자대상**
소속사업장 3월 이상 재직 근로자
- **용자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소액생계비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 **용자금액**
1인당 항목별 1천만원 한도(항목중복 시 최대 2천만원)
- **이자율**
연리 2.5%(보증료 0.9 ~ 1.0% 별도)
- **용자상환**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 **용자대상**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 사업주
- **지급대상**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
- **용자금액**
사업장 당 5천만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 **용자방식**
신용용자, 연대보증, 담보용자
- **이자율**
신용·연대보증 연리 4.2%, 담보제공 연리 2.7%
- **용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근로자 문화예술제

- **대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 **분야**
가요제, 연극제, 미술제, 문학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대부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이력이 신고된 자에 한함
- **대부방법**
3주(21일) 이상의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으로, 신청당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 실업급여수급자 제외
- **대부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훈련기간에 따라 월 50-100만원 분할 대부)
- **이자율**
연리 1.0%(보증료 1.0% 별도)
- **대부상환**
1 ~ 3년 거치 3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근로자 휴양콘도

- **대상**
모든 근로자(평일) (단 주말, 성수기는 243만원 이하 근로자만 이용가능)
- **이용가능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



📄 퇴직연금사업 안내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대상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DC형)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1. 믿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2. 저렴합니다 : 낮은 운용관리수수료(0.1%, 자산관리수수료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 간편합니다 :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
4. 업무협약을 통해 에서 적립금 자산을 관리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사용자에게 좋은 점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의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부담금 납입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부터 폐지
- 퇴직일시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 매분기 / 매반기 / 매년별로 나누어 적립 가능합니다.
 - 비용부담이 평준화되어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

근로자에게 좋은 점

- 퇴직급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사업장의 도산, 파산 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16.5% 공제)

| 대표전화 | 1661-0075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역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검색창에 을 쳐보세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안내

지사명	부서명	우편번호	소재지	관할구역	전자팩스번호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2층(충무로3가)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502-223-3101
서울강남지사	자격관리부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9층(대치동)	서울 강남구	0502-345-3200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부	055-1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4층(신천동)	서울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0502-343-3100
서울서부지사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041-08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12층(신수동)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502-207-4100
서울남부지사	가입지원부	072-54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4층(영등포동2가)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502-216-3100
서울북부지사	가입지원부	020-98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2층(상봉1동)	서울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0502-844-3100
서울관악지사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083-7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10층(구로동)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502-210-4100
서울서초지사	가입지원부	067-20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서초동)	서울 서초구	0502-217-2101
서울성동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047-82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성수동2가)	서울 성동구	0502-460-1201
의정부지사	가입지원부	116-73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5, 5층(의정부동,축협빌딩)	경기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연천, 포천, 강원 철원	0502-828-3100
춘천시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244-15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7층(석사동)	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 가평군	0502-301-4100
강릉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254-92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층(포남동)	강원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0502-330-4100
원주지사	가입지원부	263-87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 2층(무실동)	강원 원주시, 횡성군	0502-340-3100
태백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260-08	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 3층(황지동)	강원 태백시, 삼척시	0502-710-1201
영월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262-33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 3층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502-371-1200
부산지역본부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487-31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아모레퍼시픽 빌딩 7층 (초량 3동)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0502-661-1201
부산중부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472-44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2층(부전동)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0502-801-1201
부산동부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462-7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부곡동)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0502-550-4100
부산북부지사	가입지원부 (가입지원팀)	465-48	부산 북구 기철로 12, 7층(덕천동)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0502-318-3100

지사명	부서명	우편번호	소재지	관할구역	전자팩스번호
창원지사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3층 (신월동)	경남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0502-268-1200
울산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446-61	울산 남구 문수로 330, 4층(옥동)	울산	0502-226-3100
양산지사	가입지원부 (가입지원팀)	506-35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2층(석산리)	경남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0502-380-3100
진주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527-25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8층(칠암동)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0502-760-4100
통영지사	가입지원부 (가입지원팀)	530-15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6층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02-320-4100
대구지역본부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419-48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9층(삼덕동2가)	대구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0502-601-1200
대구북부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415-60	대구 북구 침산로 142, 3층(침산동)	대구 서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0502-607-4100
대구서부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426-45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9층(두류동)	대구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0502-609-4100
포항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376-85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3층(대잠동)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02-288-4100
구미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392-81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 2층(송정동)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0502-479-4100
경산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386-21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7층(중방동)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02-608-1201
영주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361-26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 10층(휴천동)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0502-608-1203
안동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367-11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안동CGV2층(웅상동)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02-680-4102
경인지역본부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215-56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7층(구월동)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502-077-3101
인천북부지사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214-17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4층(구산동)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502-540-4100
수원지사	가입지원부	163-1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층(정자동)	경기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0502-231-1206
부천시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146-2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9층(상동)	경기 부천시, 김포시	0502-650-4100
안양지사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140-0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8층(안양동)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0502-463-4101
안산지사	가입지원부	155-3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3층(본오동)	경기 안산시, 시흥시	0502-481-3101
성남지사	가입지원부	134-26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 6층(도촌동)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0502-719-3100

지사명	부서명	우편번호	소재지	관할구역	전자팩스번호
평택지사	가입지원부	177-74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8층(서정동)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502-669-3100
고양지사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104-1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마두동)	경기 고양시, 파주시	0502-810-4100
광주지역본부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619-25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8층(양동)	광주시(광산구 제외),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0502-608-4100
광산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623-64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7층 (우산동)	광주시 광산구, 전남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502-702-1201
전주지사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550-1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3길 21-12, 5층 (인후동1가)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0502-600-4100
익산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545-52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2층(어양동)	전북 익산시, 김제시	0502-839-4100
군산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540-26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2층(장미동)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502-680-4105
목포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587-30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5층(호남동)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장흥군	0502-240-4100
여수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596-76	전남 여수시 시청로 2, 1층(학동)	전남 여수시, 광양시	0502-680-1202
순천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579-47	전남 순천시 조례1길 10-27, 1층(조례동)	전남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0502-680-4109
제주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632-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4, 1층(이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0502-710-4100
대전지역본부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352-09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17층(둔산동)	대전(유성구제외), 충남 금산군	0502-301-1203
유성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340-68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8층(반석동)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0502-820-1200
청주지사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284-81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6번길 21(내덕동)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0502-229-4100
천안지사	자격관리부 (보험료 부과팀)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7층(불당동)	충남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0502-629-4100
충주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274-28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4, 2층(봉방동)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0502-840-4100
보령지사	가입지원부 (보험료 부과팀)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1길 19, 3층(동대동)	충남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	0502-849-4100

※ 전자팩스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0502를 포함 11자리 번호를 눌러야 정상수신 가능합니다.

전자팩스 관련 안내

전자팩스는 24시간 활용이 가능하므로 접수 폭주 시간대인 13시 ~ 17시를 가급적 피하여 전송하여 주시고, 수신여부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수신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17. 2. 13. ~ 3. 31. 기간 중에는 전자팩스 수신에 대한 자동회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 1588-0075

2017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얼리버드 (Early-Bird)

경품대축제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는 빠르고 편리한 토탈서비스로 !!
일찍 신고하면 경품의 혜택이 따라온다! 신고도 하고 행운도 가져가세요!



행사기간 보수총액신고 : '17.2.1.(수) ~ '17.3.10.(금) 신고한 사업장
보험료 신고 : '17.3.2.(목) ~ '17.3.24.(금) 신고한 사업장

당첨경품 1등 - 노트북, 2등 - 태블릿PC
3등 - 온누리상품권 등 322명(제세공과금22%는 당첨자부담)

당첨발표 2017년 4월 11일(화) 10:00 (우편 및 SMS안내 또는 홈페이지 게시)

1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인터넷 신고는 빠르고 편리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참고하세요.

2

보험료 산정 계산기로 쉽고 간편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센터마당 내 Help-Line(헬프라인) 또는 부조리신고센터